

검 토 보 고 서

- ☐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- ☐ 2003년 5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
 -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
 -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☐ 먼저,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 -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-1번지에 '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7월 1일 개원하는 “임해수련원”의 운영관리 업무 등을
 -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으로 이관하고, 아울러 동 조례의 내용 중 야영장 및 장장 등의 명칭을 “수련원 및 원장” 등으로 수정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.
- 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
 - 동 조례는 지난 '97년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갖은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에 개원하고자 하는 임해수련원의 운영 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여
 - 도내 단위학교 초·중·고 학생 1만 7천명들이 수련활동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고취시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의 육성 및 실천적 인성교육의 함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동 수련원 개원 이후 운영관리에 따른 정원 및 인건비 확보 대책과 수련원생들의 수련활동시 부상 및 익사 그리고 수련원의 건물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☐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, 그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동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“임해수련원” 개원에 따른 그 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고

- 기타 일부 조항의 문맥과 자구 그리고 야영장의 주소를 수정 보완 요자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* 야영장 및 장장을 “수련원 및 원장” 등으로 함.

* 산 4번지를 “산3번지”로 하고, 다만, 수련시설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욕동 2218-1번지에 둔다”를 신설하여 삽입 함.

- 다만 동 임해수련원이 지난 '97년부터 발주되고 금년도에는 개관 운영될 것이 예견되었는바 위 2건의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법정 기간에도 못미치는 10일만 예고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☐ 이상으로 동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